

PCSD 수자원분과 2001
제2차회의자료(2.21,14:00)

溫泉의 效率的인 開發·利用 및 管理方案

2001. 2. 21

行 政 自 治 部
地 方 財 政 稅 制 局

溫泉의 效率的인 開發·利用 및 管理方案

主 要 現 況

□ 法 令 運 用

- '81. 3. 2 온천법 제정·공포(법률 제3377호)
 - '95. 12. 30 개정(법률 제5121호), '99. 1. 18 개정(법률 제5627호)
 - 2000. 1. 12 개정(법률 제6119호), 2001. 1.26 개정(법률 제6390호)
- '81. 6. 18 온천법시행령 제정·공포(대통령령 제10354호)
 - '96.7.1 개정(대통령령 제15107호), '99.2.5 개정(대통령령 제16102호),
 - 2000.5.25 개정(대통령령 제16816호)
- '81. 7. 1 온천법시행규칙 제정·공포(내무부령 제350호)
 - '96.7.3 개정(내무부령 제686호), '99.2.5 개정(행정자치부령 제34호),
 - 2000. 6. 16 개정(행정자치부령 제99호)

□ 溫 泉 現 況

- 온천신고 : 240개소(신고중 19, 신고수리 99, 지구지정 109, 공보호구역 13)
- 온천지구 : 109개지구(이용중 42, 개발중 67)
- 온천공보호구역 : 13개소(이용중 8, 개발중 5)
- 이용실태
 - 업 소 수 : 512개 업소(호텔 77, 여관 220, 목욕탕 136, 기타 79)
 - 년간 이용객수 : 43,738천명(최대 : 유성 636만명, 최소 : 마곡 19천명)
- 온도현황 : 전국 평균 29~32℃(최고 : 경남 부곡 78℃)
- 심도현황 : 전국 평균 524~600m

□ 管掌 背景

-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·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'81.3.2 제정
- 온천업무는 그 개발·이용 및 관리 등 전과정에 있어 업무 체계와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법령 및 관련부처(부서)가 많은 종합업무이므로 행정자치부(당시 내무부)에서 관장·운영해 오고 있음

※ 온천개발절차도 : 붙임자료 1

※ 온천개발관련 법령

- ①온천법령 ②국토이용관리법령 ③도시계획법령 ④자연공원법령
- ⑤수도권정비계획법령 ⑥농지법령 ⑦산림법령 ⑧사방사업법령
- ⑨하천법령 ⑩사도법령 ⑪관광진흥법령 ⑫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 ⑬환경정책기본법령 ⑭군사시설보호법령 등

【행정자치부에서 온천관리 업무를 맡게 된 배경】

- '80. 1. 23 대통령께서 온천관리 소관부처 지정 지시
- '80. 2. 4 총리실 주관으로 소관부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(건교부, 농림부, 환경청 등) 합동회의에서 내무부가 관장키로 결정
 - 업무체계와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1개부처가 관장하기가 곤란하므로 자치단체의 지도·감독 및 종합행정 수행이 용이한 내무부장관이 관장함이 타당
- ※ 당시 건설부·교통부·환경청 등에서 온천업무는 종합업무이기 때문에 단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맡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소관부처가 되기를 반대

溫泉開發・利用 및 管理方案

□ 運營實態

- 현재 전국 온천지구 109개 지구중 42개 온천지구(512개 업소)가 온천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수는 4,373만명 정도임
- '95년까지는 온천지구의 지정이 상향 추세에 있었으나 적정양수량 기준 도입(1일 300톤이상) 이후에는 온천개발 감소
 - 총 109개소중 '81~'95년 94개소(85%), '96년이후 15개소(15%),
※ '90~'95년 61개소(56%)
- 우리나라 연간 물 이용량 301억톤(1일 8,600만톤)중 지하수는 39억톤(1일 1,070만톤)임.
 - 그 중 온천수의 이용은 지하수의 0.46%인 1,770만톤(1일 49,600톤)으로 극히 미미한 양이며, 일일 적정양수량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음
 - 연간 물 이용량의 0.06%
- 온천은 국민들의 휴양·건강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온천의 개발·이용·관리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하수법과는 별개로 특별법 성격으로 온천법을 제정·운영하고 있음

□ 溫泉資源의 保護對策

- 온천은 귀중한 자원으로서는
 - 온천발견신고후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·군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온천으로 개발·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 및 적정면적 산정하여 개발 추진

- 온천지구의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시에 수자원의 보전, 주변환경대책 강구,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실시 및 행자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제도화
- 온천이용·관리에 있어서도 온천자원 고갈방지를 위하여
 - 온천공별 수문관측시설(유량계 등)의 설치로 자원 관리
 -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300m이내는 전문기관의 검사 실시
 - 매 5년마다 온천자원의 보존·관리에 관한 조사 실시
 - 필요시 시장·군수는 자원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명령 등
-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수자원보호와 함께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□ 效率的인 管理方案

- 전체 지하수이용량의 0.46%에 불과한 온천수관리 업무는 치수·방재적 개념이나 수질문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물관리업무와는 별개의 영역으로서
 - 온천수는 함유된 성분·온도 등에 따라 활용 용도가 결정되는 광업권적 성격을 띤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며,
 - 단순 휴양자원으로서의 온천이용은 물론
 - 의료·보건 목적의 보양, 질병치료의 용도로도 연구발전이 시급한 분야임
- 또한 온천지구는 그 특성상 토지투기, 난개발, 보건위생상의 제문제점을 예방키 위해 환경분야, 국토의 효율적이용·관리, 관광진흥, 보건위생 등 다양한 소관부처 기능의 전문성에 따라 관리·규제되어야 하므로
- 온천관리업무는 별개의 고유업무로서 유지·발전 되어야 할 것임

□ 溫泉開發節次

① 온천정후조사·시추
(개 인)



② 온천발견신고
(발견자⇒시군구)



③ 온천발견신고 수리
(시장·군수·구청장)



④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
보호구역 지정
(시장군수 신청⇒ 시도지사 지정)



⑤ 토지용도별 조치
(시장·군수 ⇒ 시·도지사)
※ 일정면적이하는 시·도지사



⑥ 온천개발계획 수립
(시장·군수 신청⇒ 시·도지사 승인)



⑦ 온천수 이용허가등
(시장·군수·구청장)



⑧ 온천이용 및 관리

○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후 온천법에 의한 토지굴착 허가를 받아 시추

○ 온천공검사 및 수질검사
· 전문검사(4개 전문검사기관)
- 수온, 수량, 심도, 지름, 수질, 천질, 이용효과등
· 수질검사(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)
- 인체에의 유해여부
· 1일 적정양수량(300톤이상) 판단

○ 온천으로 개발·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
· 지표상의 온도 25℃이상,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경우
· 일일 적정양수량 300톤 이상
·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
·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
·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등

○ 온천지구(또는 온천공보호구역)지정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
· 온천지구지정시 고려사항 확인
○ 온천예정지구 면적에 대한 타당성 분석
· 온천원보호 및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적정면적 선정

○ 도시계획지역 -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유원지시설 결정
○ 일 반 지 역 -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
○ 자연공원구역 -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 변경
※ 기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이행

○ 적정양수량에 의한 개발면적 선정
○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온천개발 관련법규와 연계처리

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

· 온천의 채수계획,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
· 온천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
· 온천관리계획, 주변환경정비계획

○ 온천법에 의한 허가 -굴착허가, 동력장치허가, 이용허가
○ 온천이용시설물 설치등 개발추진
○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

○ 책임급수 체계망 구성
○ 수질검사와 성분검사를 정기적으로 이행

